



6월 29일(금) 10:00 이후 사용

비고	# 공동배포 : 농림축산식품부	
담당	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	과장 김석준, 감사관 김 훈 (02-3703-2027, 2040)
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	과장 최봉순, 사무관 유경숙 (044-201-1581, 1590)
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	과장 김장호, 서기관 이상무 (044-203-2811, 2821)

전국 농어촌민박 전수조사 결과, 5,772건(26.6%) 위법사항 적발

- 농어촌정비법 위반 3,538건,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,276건, 건축법 위반 958건 행정조치
- 연1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정례화,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의무화 등 추진

□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(단장: 최병환 국무1차장)은 '17.11월 ~ '18.4월까지 15개 광역시·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(21,701개)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

-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실태점검*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 되었습니다.

* '17.6~7월 국무조정실·농림축산식품부·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합동으로 기초자치단체 10곳의 농어촌민박 2,180개소를 표본점검, 718건(32.9%) 불법행위 적발

□ 전수조사 결과, 5,772건(26.6%)이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(32.9%)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.

-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,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강원도 813건,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습니다.

- 주요 위반사례는 ‘건축물 연면적 초과’ 2,145건, ‘사업자 실거주 위반’ 1,393건, ‘미신고숙박영업’ 1,276건, ‘건축물 불법 용도변경’ 958건 등 입니다.

* **(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례)**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㎡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,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 (농어촌정비법 위반)

** **(사업자 실거주 위반 사례)**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서는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, 민박 사업자로 신고 이후 다시 전출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 운영 (농어촌정비법 위반)

*** **(미신고 숙박영업 사례)**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 (공중위생관리법 위반)

**** **(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례)** 창고·사무실·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객실·직원숙소·편의시설(노래방, 당구장 등)로 사용 (건축법 위반)

□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**형사고발 129건, 행정처분 5,643건**을 조치했습니다.

□ 한편, 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첫째,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 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·위생·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고,

-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「농어촌정비법」 개정('19.6월)과 함께 민박 신고·운영·점검 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'18.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○ **둘째, 농어촌민박 이용객 안전 강화**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·개보수 용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·수건·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을 마련했고,

- 농어촌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「**농어촌정비법**」을 '19.6월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**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**하고,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※ (붙임) 농어촌 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

□ 조사 개요

- (주관) 15개 광역시·도(서울시, 대전시 제외)
- (조사기간) '17. 11. 1 ~ '18. 4. 30.
- (조사대상) 21,701개 민박업소(부패예방감시단 점검에서 제외된 민박업소)
- (조사내용)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 일제 점검

□ 조사 결과

- (결과요약) 전국 농어촌민박 21,701개 전수조사 결과 5,772건의(26.6%) 불법행위 적발*, 형사고발** 등 조치

* 연면적 초과(2,145건), 실거주 위반(1,393건), 미신고숙박영업(1,276건) 불법용도 변경(958건)

** 형사고발 129건, 행정처분 5,643건, 공무원 처분 127건

- (불법행위 유형별 분석)

① 연면적 초과 : 2,145건(9.9%)

- (민박업 시설 기준) 「농어촌정비법」 시행규칙에 의거 농어촌민박 운영은 주택 연면적 230㎡ 미만의 규모만 가능

-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㎡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,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
- * (사례)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신고 후 증축하여 운영

② 실거주 위반 : 1,393건(6.4%)

- (민박업자 자격)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 제16호 라목에 의거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만 농어촌민박 운영 가능

-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해 민박 소재지에 전입 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, 이후 다시 전출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 운영
- * (사례)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대규모 민박 운영

③ 미신고 숙박영업 : 1,276건(5.9%)

- (숙박업 운영 기준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 제1항에 의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
-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

* (사례) 미신고 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

④ 불법 용도 변경 : 958개소(4.4%)

- (민박업 시설변경 기준) 「건축법」 제 19조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용도 변경 가능

- 창고·사무실·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객실, 직원숙소 및 편의시설(노래방, 당구장 등)으로 사용

* (사례) 창고를 노래방 등으로 무단 변경, 음식점·사무실을 객실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

【 지역별·유형별 적발현황 】

시·도(시·군)	민박수	적발건수	위반 법률			
			농어촌정비법		공중위생관리법	건축법
			연면적초과	실거주위반	미신고숙박영업	무단용도변경
계(134)	21,701	5,772 (26.6%)	2,145 (9.9%)	1,393 (6.4%)	1,276 (5.9%)	958 (4.4%)
부산광역시(1)	65	23	0	0	16	7
대구광역시(1)	10	1	0	0	1	0
인천광역시(1)	525	184	34	55	32	63
광주광역시(1)	4	1	0	1	0	0
울산광역시(1)	80	54	21	15	14	4
경기도(14)	950	458	242	98	41	77
강원도(15)	4,025	813	374	173	172	94
충청북도(11)	1,235	375	14	119	186	56
충청남도(14)	1,841	677	241	123	212	101
전라북도(12)	1,169	94	9	42	29	14
전라남도(20)	3,451	622	339	117	134	32
경상북도(23)	2,219	509	273	43	40	153
경상남도(17)	2,822	1,225	200	425	292	308
제주도(2)	3,299	734	398	182	105	49
세종시(1)	6	2	0	0	2	0

* 무허가 물놀이시설 설치 43건(인천3, 경기6, 충북3, 충남7, 전북2, 전남1, 경남21)